

제267회 임시회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5.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75
----------	------

2024. 2. 5.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4. 1. 18.
- 나. 회부일자 : 2024. 1. 25.
- 다. 상정일자 : 2024. 1. 30.

2. 안건설명

가. 제안설명자 : 이동길 의원

나. 개정이유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급식조리사 및 도우미 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을 정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부식비, 급식조리사 및 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안 제6조제1항제2호~안 제6조제1항제3호)

나.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제4호)

라.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1. 24. ~ 2024. 1. 28.)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윤선영)

□ 의안번호 제217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8일 이동길 의원이 제안하여 2024년 1월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공동 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 급식조리사 및 도우미 인건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6조제1항에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명시함

2. 중식 지원용 양곡 및 부식 구입비

3. 냉·난방 비용 및 취사용 연료비

4. 중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등

- 그리고 부칙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제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명시하였음

□ 경로당 급식 운영 빈도 및 이용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급식 운영빈도 및 이용자 수 현황 >

(단위: 개소, 기준: 24. 1 1.)

구분 이용자 수	급식 운영 빈도							
	미시행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7회
총 94개소	9	4	11	30	3	33	2	2
이용자 없음	9							
1~9명			4	7		4		
10~19명		3	4	15	3	16	2	2
20~29명		1	2	7		9		
30명 이상			1	1		4		
비율	9.6%	4.3%	11.7%	31.9%	3.2%	35.1%	2.1%	2.1%

※ 미운영 3개소 제외, 94개소 대상

□ 중식도우미(노인일자리) 배치 현황

○ **총 47개소 75명 배치**(구립 32개소 55명, 사립 15개소 20명)

(단위: 명, 기준: 24. 1 1.)

연번	구분	경로당명	중식도우미	연번	구분	경로당명	중식도우미
1	구립	중곡1동	2	25	구립	화양동	1
2	구립	한마음	2	26	구립	중앙	2
3	구립	장수	2	27	구립	자마장	1
4	구립	중곡3동	2	28	구립	청아	2
5	구립	중곡4동	2	29	구립	자양2동제1	1
6	구립	용곡	1	30	구립	자양2동제2	1
7	구립	대원	2	31	구립	자양4동제2	1
8	구립	능동	3	32	구립	마실	2
9	구립	구의	3	33	사립	우성1차	1
10	구립	명성	3	34	사립	우성3차	2
11	구립	구의1동제2	3	35	사립	우성7차	1
12	구립	복조리	1	36	사립	자양삼성	1
13	구립	아차산	1	37	사립	경남아너스빌	1
14	구립	소능	2	38	사립	광장청구	1
15	구립	구의2동	3	39	사립	한강우성	1
16	구립	군자	2	40	사립	자양2현대3차	1
17	구립	구의새마을	1	41	사립	광장현대8차	2
18	구립	산의마을	3	42	사립	화양동현대	1
19	구립	광장제1	1	43	사립	광나루현대	1
20	구립	광장제2	1	44	사립	워커힐푸르지오	1
21	구립	자양1동	1	45	사립	일성파크	2
22	구립	노유산	1	46	사립	구의래미안	3
23	구립	양마제2	1	47	사립	구의새한	1
24	구립	모진동	1	계			75

※ 미배치 경로당 47개소(미운영 3개소 제외)

□ 2024년 경로당 운영지원 예산 현황

구분	매칭비율(%)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총액 (단위:천원)
	국	시	구			
운영비	-	60	40	전체 경로당	월 40만원~66만원	612,000
환경개선비	-	-	100	전체 경로당	상·하반기 90만원×2회	180,000
냉방비(7~9월)	20	40	40	구립 경로당	실비 지원	16,500
난방비(11~3월)	20	40	40	구립 경로당	실비 지원	100,000
양곡비	20	40	40	희망 경로당	상반기 정부양곡 20kg 최대 8포	42,536
추가 양곡비	-	-	100	희망 경로당	월별 농협쌀 10~20kg 1포~3포	89,280

※ 운영비: 부식, 공과금, 소규모 수선 등 / 주식비: 양곡 지원 / 환경개선비: 소액 가전 등 물품 구매, 소규모 시설 보수 등에 사용

□ 개소별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원, 개소)

2024년 운영비 지급					비고
연번	지원금액	총계	구립	사립	
1	400,000	19	-	19	
2	420,000	13	-	13	
3	450,000	13	2	11	
4	460,000	3	-	3	
5	470,000	3	-	3	
6	500,000	1	-	1	
7	510,000	5	4	1	
8	530,000	2	-	2	
9	550,000	4	4	-	
10	560,000	3	3	-	
11	570,000	3	3	-	
12	580,000	4	4	-	
13	590,000	6	6	-	
14	600,000	2	2	-	
15	640,000	3	3	-	
16	650,000	2	2	-	
17	660,000	8	8	-	
총 계		94	41	53	

※ 주간 중식인원(50점), 경로당 이용자 수(40점), 면적(10점) 지표에 따라
배점하여 차등 지원

※ 2023년: 월 40~58만원 지원 / 미운영 3개소: 광장현대9차, 유천빌라, 더샵
스타시티

□ 동 조례안 관련 상위법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의안
접수가 된 상태임(2023.12.6.)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박상혁의원 등 20인)

□ 종합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부식비와 인건비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음
- 경로당이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을 위한 지원은 사회복지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공감되는 부분임
- 현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동 조례안 관련 상위법이 지난 12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인 바, 예산 확보나 정책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시행시기는 부칙에 신설된 것처럼 상위법 개정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

-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